

무배당 교통사고재해보험 상품요약서

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교통사고재해보험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
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I. 상품의 특이사항

Q : 「무배당 교통사고재해보험」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?

A : 「무배당 교통사고재해보험」은 1 년만기 상품으로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 사망/장해,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,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장해, 비행기·선박·열차에 의한 교통재해 사망보장, 휴일 재해 사망, 휴일 재해장해를 보험형태에 따라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.

Q : 「무배당 교통사고재해보험」의 피보험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?

A :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는 새로운 피보험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Q : 「무배당 교통사고재해보험」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나요?

A : 「무배당 교통사고재해보험」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(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 인당 “최고 5 천만원”이며, 5 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

II. 보험가입 자격요건

1. 보험종류

- 보장성보험
- 개인형

명칭	세목
무배당 교통사고재해보험	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형
	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형
	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장해형
	비행기·선박·열차에 의한 교통재해 사망형
	휴일 재해사망 보장형
	휴일 재해장해 보장형

※ 다만, 무배당 하나원큐 교통사고재해보험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형 및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장해형만 가입가능함

2. 보험기간, 보험료 납입기간,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

보험기간	보험료 납입기간	가입나이	보험료 납입주기
1 년 만기	전기납	만 15 세~80 세	연납

3. 가입한도

주계약(무배당 교통사고재해보험) : 100 만원 ~ 500 만원(100 만원 단위)

4. 건강진단 여부

「무배당 교통사고재해보험」의 경우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, 나이,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,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.

Ⅲ.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

1. 상품의 구성

무배당 교통사고재해보험	(주계약)
+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	(제도성특약)
+ 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	(제도성특약)

2.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

아래의 내용은 보험금 지급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[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형]

[기준: 보험가입금액 100 만원]

급부명	지급사유	지급금액
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	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	1,000 만원
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 장애급여금	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이 3%이상 100%이하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	1,000 만원 × 해당 장애지급률

(주)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
[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형]

[기준: 보험가입금액 100 만원]

급부명	지급사유	지급금액
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	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	1,000 만원

(주)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
[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장애형]

[기준: 보험가입금액 100 만원]

급부명	지급사유	지급금액
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장애급여금	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이 3%이상 100%이하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	1,000 만원 × 해당 장애지급률

(주)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
[비행기·선박·열차에 의한 교통재해 사망형]

[기준: 보험가입금액 100 만원]

급부명	지급사유	지급금액
비행기·선박·열차에 의한 교통재해 사망형	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비행기·선박·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	1,000 만원

(주)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
[휴일 재해사망 보장형]

[기준: 보험가입금액 100 만원]

급부명	지급사유	지급금액
휴일 재해사망 보장형	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	1,000 만원

(주)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
[휴일 재해장해 보장형]

[기준: 보험가입금액 100 만원]

급부명	지급사유	지급금액
휴일 재해장해 보장형	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%이상 100%이하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	1,000 만원 × 해당 장해지급률

(주)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
3.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

가.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

-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
-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-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
나. 보험계약의 무효관련 사항

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,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. 다만,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보험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.

-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
- 만 15 세 미만자,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. 다만,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.
-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. 다만, 보험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보나, 상기 만 15 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

다.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

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,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·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(HIV)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(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)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.

라.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사항

- 계약 전 알릴 의무

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(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)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. 다만,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 3조(의료기관)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.

-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

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(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)이내에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,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IV. 보험료 산출기초

1. 적용이율

Q :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?

A :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, 이 할인율을 적용이율이라고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,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.
「무배당 교통사고재해보험」의 적용이율은 연 2.5 % 입니다.

2. 적용위험률

Q :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?

A :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,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.

구분	남자	여자
무배당 예정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교통재해 사망률(15세이상 단일률)	0.000006	0.000002
무배당 예정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교통재해 장애율(단일률)	0.000008	0.000005
무배당 예정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률(15세이상 단일률)	0.000040	0.000014
무배당 예정 차량탑승중 3~100% 교통재해장애율(단일률)	0.000046	0.000030
무배당 예정 비행기·선박·열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률(15세이상 단일률)	0.000004	0.000001
생명보험 참조손보험요율 2의 재해사망률(15세이상 단일률)	0.000263	0.000084
생명보험 참조손보험요율 2의 3~100% 재해장애율(단일률)	0.000234	0.000126

3.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

Q :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무엇인가요?

A :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,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.

V.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

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,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 「무배당 교통사고재해보험」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.

VI.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

1.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

Q :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,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

A : 우리 하나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율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.

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써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,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.

2. 해지환급금 예시

[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형]

[기준: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 만원, 40 세, 연납 (단위 : 원)]

경과기간	남자			여자		
	납입보험료(A)	해지환급금(B)	환급률(B/A)	납입보험료(A)	해지환급금(B)	환급률(B/A)
3 개월	270	203	75.19%	140	105	75.00%
6 개월	270	135	50.00%	140	70	50.00%
9 개월	270	68	25.19%	140	35	25.00%
1 년	270	0	0.00%	140	0	0.00%

[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형]

[기준: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 만원, 40 세, 연납 (단위 : 원)]

경과기간	남자			여자		
	납입보험료(A)	해지환급금(B)	환급률(B/A)	납입보험료(A)	해지환급금(B)	환급률(B/A)
3 개월	770	578	75.06%	270	203	75.19%
6 개월	770	385	50.00%	270	135	50.00%
9 개월	770	193	25.06%	270	68	25.19%
1 년	770	0	0.00%	270	0	0.00%

[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장애형]

[기준: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 만원, 40 세, 연납 (단위 : 원)]

경과기간	남자			여자		
	납입보험료(A)	해지환급금(B)	환급률(B/A)	납입보험료(A)	해지환급금(B)	환급률(B/A)
3 개월	890	668	75.06%	580	435	75.00%
6 개월	890	445	50.00%	580	290	50.00%
9 개월	890	223	25.06%	580	145	25.00%
1 년	890	0	0.00%	580	0	0.00%

[비행기·선박·열차에 의한 교통재해 사망형]

[기준: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 만원, 40 세, 연납 (단위 : 원)]

경과기간	남자			여자		
	납입보험료(A)	해지환급금(B)	환급률(B/A)	납입보험료(A)	해지환급금(B)	환급률(B/A)
3 개월	80	60	75.00%	20	15	75.00%
6 개월	80	40	50.00%	20	10	50.00%
9 개월	80	20	25.00%	20	5	25.00%
1 년	80	0	0.00%	20	0	0.00%

[휴일 재해사망 보장형]

[기준: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 만원, 40 세, 연납 (단위 : 원)]

경과기간	남자			여자		
	납입보험료(A)	해지환급금(B)	환급률(B/A)	납입보험료(A)	해지환급금(B)	환급률(B/A)
3 개월	1,650	1,238	75.03%	530	398	75.09%
6 개월	1,650	825	50.00%	530	265	50.00%
9 개월	1,650	413	25.03%	530	133	25.09%
1 년	1,650	0	0.00%	530	0	0.00%

[휴일 재해장해 보장형]

[기준: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 만원, 40 세, 연납 (단위 : 원)]

경과기간	남자			여자		
	납입보험료(A)	해지환급금(B)	환급률(B/A)	납입보험료(A)	해지환급금(B)	환급률(B/A)
3 개월	1,460	1,095	75.00%	790	593	75.06%
6 개월	1,460	730	50.00%	790	395	50.00%
9 개월	1,460	365	25.00%	790	198	25.06%
1 년	1,460	0	0.00%	790	0	0.00%

Ⅶ. 보험가격지수

Q : 보험가격지수란 무엇인가요?

A :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(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)을 참조순보험료 총액*과 평균사업비총액**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“보험가격지수”라고 합니다.

*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(평균공시이율) 및 참조순보험료를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

**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(역산)한 값

[기준 : 40 세]

상품명	보험기간	납입기간	보험가격지수		가입금액 (만원)
			남자	여자	
(무) 교통사고재해보험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형	1	1	117.8%	114.8%	100
(무)교통사고재해보험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형	1	1	120.8%	111.0%	100
(무)교통사고재해보험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장애형	1	1	122.2%	114.8%	100
(무)교통사고재해보험 비행기·선박·열차에 의한 교통재해 사망형	1	1	117.6%	110.7%	100
(무)교통사고재해보험 휴일 재해사망 보장형	1	1	120.0%	112.7%	100
(무)교통사고재해보험 휴일 재해장애 보장형	1	1	118.9%	113.4%	100